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11. 7. 19.

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학교 급식의 지원범위와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규정을 구미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1조 (목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제5조(지원방법) 제3항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로 하고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1항에 우수 식재료를 『우선』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로 수정

3. 참고사항

- 「학교급식법」 제10조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구미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에 학교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 및 우수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및 유치원·특수학교에 학교무상급식이 -----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또는 자치단체, 학교설립·경영자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정안과 같음).
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	4. ----- ----- -----	4. ----- ----- -----

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다. (생략)

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바. (생략)

<신설>

4. (생략)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력추적관리 농산물·지리적표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나.·다. (현행과 같음)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마.·바. (현행과 같음)

사.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

가. (개정안과 같음)

나.·다. (현행과 같음)

라. (개정안과 같음)

마.·바. (현행과 같음)

사. (개정안과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② (생 략)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5조(지원방법)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관할 지역 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③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학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무상급식과 급식경비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와 무상급식 -----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예
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
다.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① (개정안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 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생략)

2. 교육청의 관련 과장

3. ~ 9. (생략)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인은 관련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 및 무상 급식 경비를 교부받은 급식 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우수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교육지원청-----

3. ~ 9. (현행과 같음)

③ ----- 소장-----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

----- 우수식재료를 우선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 9.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 ----- -----. 1. ~ 4. (현행과 같음) 5. <u>학교 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u>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 ----- -----. 1. ~ 4. (현행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략) 5. <u>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u> 6. 시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u>교육청</u> 간의 급식업무 협의 7. (생략) ③ ~ ⑤ (생략)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교육지원청</u> ----- ----- 6. ----- <u>교육지원청</u>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구미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특수학교에 학교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 및 우수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또는 자치단체, 학교설립·경영자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4호(중전의 제3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력추적관리 농산물·지리적표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 사.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학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무상급식과 급식경비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급식경비”를 “급식경비와 무상급식”으로,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관할 지역 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를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급식경비 및 무상급식 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우수식재료를 우선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시장”을 “소장”으로 한다.

제9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교 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제10조제2항제5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